

-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,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
  -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, 대의원회, 조합연수, 조합행사, 설명회,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
  -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교섭 대표 및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
- ※ 교원노조 및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소속 교원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공가기간은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 협의에 직접 참가한 시간과 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시간을 포함하며, 단체 교섭 및 교섭 관련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등의 부대시간은 공가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

#### 다) 공가의 사례

**【사례 1】**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. 다만, 공무원 임용 시 「국가기술자격법」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

**【사례 2】** 구속된 경우 기소전까지는 공가처리

※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, 불기소 · 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. 다만, 직위해제 또는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

**【사례 3】** 징계 · 소청 ·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,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. 다만,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함

**【사례 4】**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, 민사 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고인 ·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

**【사례 5】**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, 참관 등의 사항으로 참석하거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은 공가처리 할 수 없으며 단체교섭이나 교섭관련협의가 아닌 교원노동조합의 자체규약에 의한 총회, 대의원회, 조합연수, 조합행사, 설명회, 기타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교육부,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교원노조법에 의한 법적 근거없이 참석하는 경우는 공가처리 대상이 아님

**【사례 6】** 교원이 국가대표로서 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(합숙훈련 및 출전 기간)은 공가로 처리

**【사례 7】** 예방접종 시 공가 사용이 되는지? (교원휴가 관련 질의·답변 사례집(2022.2월, 교육부))  
☞ 「교원휴가에 관한 예규」제7조(공가)제13호에 따르면 공무국외 출장 등을 위하여 「검역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공가 대상이 됨.